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4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박덕흠 • 고동진 • 백종헌

윤재옥 · 김성원 · 박충권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 (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24미터"를 "12미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국가어선정보 포털 등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어선거래 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이하 "국가어선정보포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각각 "국가어선정보포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국가어선정보포털의 운영"으로,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을 "국가어선정보포털의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

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은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으로서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0 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게 정 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1 <u>12미터</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국가어선정보포털 등의 구
<u>축·운영)</u> ①
<u>국가</u>
<u> 어선정보포털</u>
②
국가어선정보포털(이하

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경우에는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u>어선거래</u>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u>어선거래시스템</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 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정보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u>어선거래</u>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어선정보포털"
③ <u>국가어선정</u>
<u>보포털</u>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어선정보포털</u>
④ <u>국가어선정</u>
보포털의 운영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하여 <u>어선거래시스템의</u> 관리·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 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국가어선정보포털의
<u>관리·운영</u>
⑤·⑥ (현행과 같음)